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Review of Asian Studies) 발간 규정

최초제정: 2011년 3월 22일

최근개정: 2020년 11월 2일

편집규정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발행하는 국문학술지인 『아시아리뷰』 (영문명: Review of Asian Studies)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논문심사 절차와 방법 등 편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아시아리뷰』의 특성) 아시아에 관한 지역연구와 주제연구를 포괄하는 사회과학 전문학술지로서 아시아연구소의 연구 성과와 활동을 반영하고 관련 연구자 및 연구단체의 교류와 연구 활성화를 지향한다.

제3조 (『아시아리뷰』의 내용) 본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게재한다.

1. 기획/특집 논문(아시아연구 분야에서 공통적 관심사나 이론적 쟁점)
2. 일반 연구 논문

제4조 (학술지 발간일정)

1. 학술지는 연 3회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을 발행일로 한다.
2. 학술지의 호수는 권(호)와 통권표시를 병행한다.

예: 아시아리뷰 제1권 제1호 통권 1호
아시아리뷰 제1권 제2호 통권 2호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7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은 『아시아리뷰』가 포괄하는 연구영역에서 학문적 경력과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본 연구소의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 발간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책임편집과 편집간사 혹은 편집조교를 둘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아시아리뷰』의 편집방향 결정 및 발행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
2. 논문의 초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논문의 재심과 게재여부의 최종판정
3. 학술지 편집 및 논문심사 규정의 개정

『아시아리뷰』의 발간: 심사기준 및 절차

제10조. (논문제출) 논문제출은 다음의 조항을 따라야 한다.

1. 『아시아리뷰』에 투고하는 논문은 순수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지면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2.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원고작성 규정’을 따라야 하며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소재 연구자에 한하여 외국어원고를 접수한다.
3. 논문은 수시로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와 이메일(snuacjournal@snu.ac.kr)을 통해 접수하며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필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다.
4. 제출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심사 제외논문) 다음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의 학술지, 논문집 등에 발표된 논문
2. 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연구된 논문
3.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논문
4. 분량, 형식, 논문 작성 규정을 현저하게 위반한 논문

제12조 (특집논문) 특집논문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게재한다.

1. 특집논문 모집은 편집위원회의 기획을 거쳐 공모나 청탁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기획/특집 논문도 일반 투고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기획/특집의 성격이나 취지를 감안해서 편집위원회의 권한으로 심사의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집 편집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1. 편집위원회는 전공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접수된 논문과 심사평가 의뢰서 및 평가서를 송부한다. 홈페이지의 온라인 논문투고를 통해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온라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논문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심사하고 다음 네 단계로 그 결과를 판정하며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① ‘게재 가’ : 별다른 문제점이 없거나, 교정과정에서 일부 문구 수정을 거치기만 한다면 현 상태에서 게재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② ‘수정 후 게재’ : 일부 문제가 있으나 그것이 논문 전체의 논지를 손상하지 않으며, 논문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고도 수정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③ ‘수정 후 재심사’ :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논문 전체의 논지가 모순되거나 불명확해 논문의 기본틀에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다만 그 문제가 수정될 수 있는 종류이고, 수정될 경우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논문

④ ‘게재 불가’ : 완전히 다시 작성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3. 투고된 논문의 종합판정은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편집위원회에서 재검토 한다.

③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불가’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하고 모든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등급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판정
1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2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4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5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6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7	게재 가	게재 불가	
8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불가
9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10	게재불가	게재 불가	

4. (재심사)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5. (탈락논문)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저자에게 통보하고 탈락논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6. (적합성 심사) 편집위원회는 아시아리뷰의 성격에 부적합한 논문에 대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4조 (비평논문) 일반논문과 별도로 비평논문을 접수한다.

1. 비평논문은 아시아연구에서 특정지역이나 연구영역에 있어서 이론적/방법론적 전환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주요 문헌(논문 또는 저서)에 대한 종합적 소개와 평론을 의미한다.
2. 비평논문은 서평과 달리 연구논문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3. 심사규정 및 절차 등 기타 사항은 일반논문과 동일하다.

제15조 (게재)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다음의 조항에 따라 게재된다.

1. 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아시아리뷰』의 편집원칙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된다.
2. 원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제출자가 별쇄본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3. 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하고 게재 논문의 인터넷 저작권은 아시아연구소가 갖는다.

제16조 (발간 및 원고 접수마감일) 『아시아리뷰』는 연 3회 발행하며 발간일은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이에 따라 각 호별 원고 접수마감일은 2월 15일, 6월 15일, 10월 15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